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지방교육세의 환부 - 법제260조의6

지방교육세의 과오납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부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부한다.

○ 지방교육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 법제53조 제2항 단서

지방교육세의 경우 지방교육세는 도세(특별·광역시세)이므로 다른 도세(특별·광역시세)와 마찬가지로 시·군·구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함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하나, 다른 지방세와는 달리 지방교육세는 이미 산출된 지방세액을 과표로 하는 부가세이므로 별도의 징수경비가 소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교육세의 경우도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고 있고, 교육재정의 확보 필요성에 따라 징수교부금은 교부하지 않는 점<sup>10)</sup>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 제53조제2항 단서>

다만, 당해 地方稅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道稅를 당해 地方稅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徵收交付金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부칙 제12조

지방교육세는 교육세중이 일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한 것이므로 교육세 당시에 교육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서의 지방교육세를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교육세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교육세와 관련한 조항이 다른 법령<sup>11)</sup>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로 보도록 하였다.

10) 법제53조제2항 단서의 신설과 관련하여 법규정 해석의 착오로 공동시설세나 도시계획세 등의 경우도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 등 지방세액을 과표로 하는 부가세이므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으나, 공동시설세 등은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이므로 징수교부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11) 다른 법령에 교육세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예로는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외국인관광객등에